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69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2월 25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보건용 마스크 지원 대상을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정하고,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- 안 제12조제2항의 마스크 지원 대상을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4조제1호의 취약계층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정함.
- 안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함.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·노인 등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4조제1호의 취약계층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	행	개 정 안	수 정 안
	<신 설>	<p>제12조(취약계층 등의 보호)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·노인 등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(이하 “취약계층 등”이라 한다)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취약계층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(취약계층 등의 보호)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·노인 등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4조제1호의 취약계층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</p>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취약계층 등의 보호)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·노인 등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4조제1호의 취약계층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〈신 설〉</p>	<p>제12조(취약계층 등의 보호) ① 시장은 <u>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·노인 등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시장은 「<u>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</u>」 제14조제1호의 <u>취약계층</u> 및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」에 <u>따른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